

서울특별시 시민청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70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‘시민청’은 서울시민 모두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대표 소통공간으로 시청사 내에 위치하여 높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됨
- 나. 또한, 전시·공연·행사 등을 위한 시민편의시설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안정적 운영이 동시에 요구되어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,
-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시민청 사무

나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시민청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내
- 시설규모 : 총 8,150.65㎡(지하 1·2·4층)

지하1층(5,401.02㎡)	지하2층(2,269.75㎡)	지하4층(479.88㎡)
활짝라운지, 시민청갤러리 등 12개 공간	태평홀, 바스락홀 등 6개 공간	수장고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8조(운영·관리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(사업의 대행)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2012. 11. 1.~2015. 10.31.(3년, (재)서울문화재단)
- 2차 : 2015. 11. 1.~2018. 12.31.(3년2월, (재)서울문화재단)
- 3차 : 2019. 1. 1.~2021. 12.31.(3년, (재)서울문화재단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시민청은 시청사 내에 위치한 공공성을 지닌 시민편의시설이라는 특수성 지니고 있어 전시·공연·행사 등 공공성을 띤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·운영하고 시설관리 등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함은 물론 공공의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겸비한 기관·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
- 또한,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행정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권역별 시민청 확산 시 '시민청 허브'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간의 운영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(재)서울문화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함

라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2년(2022. 1. 1.~2023. 12. 31.)
- 위탁업무
 - 시민청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사업 전반
 - 시민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
 - 시민참여 방안 및 안전대책 수립·시행, 사업시행 평가
- 소요예산 : 2,127백만원('21년 예산 기준)
- 수탁기관 : (재)서울문화재단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

제18조(운영·관리의 위탁) ① 시장은 시민청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.

3. 문화·체육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4조(사업의 대행) 재단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가 부담한다.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19조의 5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

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 ① 출자·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나. 예산조치 : '22년도 예산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시민청 사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(별첨)

※ 작성자 : 시민소통담당관 현장소통팀 황희성 (☎ 2133-6418)